

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<br>신안산대학교 | <b>교원인사위원회 규정</b>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4-1-2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995. 3. 1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24.3.20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교무처</td></tr> </table> | 규정번호 | 4-1-2 | 제정일자 | 1995. 3. 1. | 개정일자 | 2024.3.20. | 책임부서/팀·계 | 교무처 |
| 규정번호  | 4-1-2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 제정일자  | 1995. 3. 1.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 개정일자  | 2024.3.20.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 책임부서/팀·계  | 교무처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<2011.12.21 삭제> 신안산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2011.12.21, 2014. 2.10 개정>

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 <2014.2.10. 개정>

③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보직자와 비보직자, 계열,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2018. 6.27 신설>

**제3조(위원회 및 직무)**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장으로 한다. <개정 2021.8.20.,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회의소집 등)**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 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임면 <2011.12.21 삭제>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
2. 학생의 교수·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**제6조(제척)**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

**제7조(회의록 작성 등)**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 단, 비대면 회의 필요 시 확인으로 한다. <2022. 9. 19. 개정>

**제8조(간사)**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1인을 간사로 둔다.

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